



보도시점 2024. 4. 22.(월) 06:00  
4. 22.(월) 석간

배포 2024. 4. 19.(금) 16:00

# 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

-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, 축산차량 출입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-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첫째,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“전실\*(前室)”이 건폐율\*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,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\*\*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·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다.

\* 전 실(前室) : 축사 출입시 신발·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설비

건폐율(建蔽率) :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

\*\*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

둘째, 가축·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·군·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,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. (시행일 ‘25.1.1.)

셋째, 종전에는 축산농가,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(手記)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, 전자무늬(QR 코드)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다.

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(병성감정)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(3명 상근(常勤) → 1명 상근)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.

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”라고 당부했다.

## 붙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

이번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개정 내용은  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[www.law.go.kr](http://www.law.go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방역정책국	책임자	과 장	이동식 (044-201-2511)
	방역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박경일 (044-201-251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- 축산농가 전실 설치·운영 부담 완화(제3조의5제4항, 제5항, 별표1의2, 별표1의10, 별지 제6호의2서식)
  - 가축 사육시설 출입시 손·신발 등을 소독하는 “전실(前室)”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실 설치·운영의 부담 완화
  - '15.4.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\*에 전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전실에 대한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
    - \* 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% 해당( '24.2.14일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)
-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(제20조의8, 시행일 '25.1.1.)
  - (현행) 축산차량의 소유자·운전자가 다른 시·군·구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, 소유자·운전자가 직접 기존 등록지에서 말소 절차도 이행하고 다른 시·군·구에서 신규 등록 절차도 이행
  - (개정) 축산차량의 운전자·소유자가 다른 시·군·구에 변경 등록 절차만 이행하면됨(말소절차 없이 기존 등록지에서 다른 등록지로 시·군·구가 이관)
- 축산농장 출입 사람·차량 정보 디지털화 기반 마련(제20조의2)
  - (현행) 농장,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 기록을 수기(手技)로 기록하여 보관
  - (개정) 출입기록을 “전자적 방법”으로 기록보관이 가능토록하여 출입 정보 디지털화(전자 출입기록부) 기반 마련
- 민간검사기관(병성감정) 허가요건 중 수의사 자격기준 규제 개선(별표 1의7)
  - (현행) 책임자와 담당자 총 3명 이상의 수의사(상근만 인정)
  - (개정) 책임자 1명만 상근 수의사, 2명 이상은 비상근 가능
- 방역 교육대상자의 보수교육 주기 개선(제7조의11 제2항, 제20조의6)
  - 방역위생관리업자 보수교육은 직전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“1년 마다”에서 “연 1회 이상”으로 개정
  - 축산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은 교육수료일 기준 “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내”에서 “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”로 개정(시행 '25.1.1.)